제924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선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(해양수산부)	1.실습선원에 대한 선내 질서 유지 의무 부과 등(신설) ○ 「선원법」 선내 괴롭힘 규정(강제근로 금지, 선내 괴롭힘 금지, 선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)을 실습선원에게까지 확대 적용 ▶선원법 시행규칙 제3조	1.비중요
2	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(중소벤처기업부)	1.휴면조합 지정요건 강화(강화) ○ 휴면조합의 지정요건에 이사장(중앙회, 연합회의 경우 회장)이 1년 이상 공석인 경우 및 출자금이 전액 잠식되어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추가 * 다만, 출자금 잠식의 경우 설립인가일부터 3년이 경과한 연합회, 조합 또는 사업조합만 해당 ▶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1조의2	1.비중요
3	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(해양수산부)	1.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의 교육주기(신설) ○ 해양폐기물관리업자는 해양폐기물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이 5년마다 1회 이상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도록 규정 ▶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2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4	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(해양수산부)	1.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시 자본금 기준(신설) ㅇ 자본금 규모를 유사사례를 참조하여 해양폐기물수거업과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의 자본금 기준을 2억원으로 규정 ▶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	1.비중요
5	초·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(교육부)	1.학교폭력 조치사항 보존기간 연장(신설) ㅇ 학교생활기록부 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·보존 기준 조정 - 학교폭력 조치사항 중 6호(출석정지), 7호(학급교체), 8호(전학)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기간을 현행 졸업 후 '2년'에서 '4년'으로 연장 ▶초·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	1.비중요
6	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(교육부)	1.학교폭력예방센터 지정요건 등(신설) ㅇ 학교폭력 예방센터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에 공공기관, 정부출연연구기관 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등의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을 포함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▶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 4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2.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지정요건(신설) ㅇ 피해학생에게 상담, 치료, 보호 등을 연계 · 지원하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자격 기준을 사회복지사, 교원, 경찰 등으로 지정 ▶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3.가해학생 조치 지연 등에 대한 교육감의 조사 요건(신설) ㅇ 피해학생 측이 교육장 · 학교장의 조치 지연 · 징계 미이행 등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교육감이 조사하여야 하는 상황 규정 ▶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4.집행정지 결정 시 피해자 의견청취 예외 사유(신설) ㅇ 피해학생 측이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 경우, 본안 심리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진술한 경우 등 의견청취가 곤란한 경우을 의견청취 예외사유로 규정 ▶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	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7	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(환경부)	1.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기준(신설) ㅇ 재생원료사용비율 표시를 하려는 경우 제품·용기 출고량의 중량 기준으로 품목에 따라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 이상 사용 ▶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 2.숙박업의 1회용품 사용제한 준수사항(신설) ㅇ 객실 50실 이상의 숙박업이 1회용품 사용제한 대상 업종으로 추가됨에 따라 사용제한 일회용품의 종류, 준수사항 등 세부 규정을 마련 ▶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	1.비중요 2.비중요
8	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(교육부)	1.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및 폐쇄 신고(신설) ㅇ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교육감에게 등록한 자가 명칭, 위치 등 8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, 교육감에게 변경 등록하도록 근거 마련 ㅇ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교육감에게 등록한 자가 시설을 폐쇄할 경우, 폐쇄 예정 30일 전까지 폐쇄사유, 폐쇄 연월일 등을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근거 마련 ▶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4,제12조의5	1.비중요 2.중요 3.비중요 4.비중요 5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2.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 의무(신설) ㅇ 평생교육사의 양성, 보수 수준, 활동 실태 등의 항목에 대해 조사에 응해야 할 의무를 부과 ▶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2 3.평생교육기관 평가 및 인증 대상 및 기준(신설) – (인증대상) △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△그 밖에 교육부 장관이 평생교육기관 인증·평가 대상으로 정하는 기관 – (인증기준) △기본요건(강의실, 교육장비 등) △운영요건(교육과정·방법, 평생교육사 배치 등) △역량요건(평생교육기관 특성화·질관리 등) 규정 * 절차·방법·유효기간·결과공개·활동 등 구체적 사항은 교육부 고시로 위임 ▶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의2 4.평생교육시설 공시정보 범위 및 횟수, 시기 등(신설) ㅇ 학력인정(초중고, 전문대학) 평생교육시설 및 그 밖에 평생교육시설이 공시해야 하는 항목의 공시정보범위,공시횟수, 공시시기를 구체화 ▶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의3	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5.평생교육시설 폐쇄인가 또는 폐쇄신고시 제출 서류 (강화) ㅇ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인가취소 또는 폐쇄신고시 재학생 보호방안 등 일정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할 사항 규정 ▶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9조,제32조,제47조,제52조	
9	해외이주법 시행규칙 개정안 (재외동포청)	1.해외이주알선업 변경등록 사유(신설) ㅇ 해외이주법 변경등록 사항에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 추가 ▶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7조 2.위반사항 시정기간 및 가중처분 관련 규정 신설(신설) ㅇ 행정처분을 받고 2개월의 시정기한을 정하여 그 시정기한 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게 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, 가중처분하는 조항 신설 ㅇ 누적된 제재처분을 적용 기간을 2년으로 명확히 규정 ▶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11조 3.손해배상시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증 갱신 의무(신설) ㅇ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증을 갱신받도록 의무부과 ▶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9조	1.비중요 2.중요 3.비중요 4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4.해외이주알선업체 보증보험 가입시 최대가입기간(강화) ㅇ 보증보험 가입기간을 1년 이상에서 1년 이상 3년 이하로 명시 ▶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8조	
10	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(소방청)	1.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(신설) ㅇ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관련, 구조, 점등시험, 조도시험, 축전지식 조명등의 충전장치, 축전지식 조명등의 축전지 성능, 발광표지의 휘도시험, 충격시험, 교체용 부속품의 구비, 표시사항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 ▶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체	1.비중요